

설비 구축 계약서

(이하 "본 계약서")

1. 사업명 : 롯데웰푸드 김천공장 자동화설비 제작설치공사(이하 "본건 공사")
2.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공단3길 94
3. 준공기한 : 2025년 04월 30일
4. 계약기간 : 2023년 11월 01일 ~ 2025년 07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일백삼십육억원정 (₩13, 600, 000, 000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액의 기준 : 견적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7. 대금 지급방법
 - 가) 선금(계약금액의 20%)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악월 말일까지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나) 중도금 1차 (계약금액의 15%): "수급인"은 Sub-Order(주요기자재: 모터, 철자재 등 장납기품) 완료시 "도급인"에게 중도금 1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다) 중도금 2차 (계약금액의 25%): "수급인"은 설비 납품 현장 도착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2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라) 중도금 3차 (계약금액의 20%):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설비 설치 완료 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3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마) 준공금(계약금액의 20%): "수급인"은 성능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 서류 및 일반조건 제25조 서류 제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최종 인수조건 충족에 대한 "도급인"의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최종 인수인계서 서명 시점에 "도급인"에게 준공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도급인"은 적정성 검토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최종 인수 서명 시점)로부터 2년
9. 위약벌
 - 가) 지체상금율: 매지체(근무)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3/1,000, 총 계약금액의 10% 한도

지체상금은 위약벌로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나) 성능미달 책임: 성능미달 설계 제안한 성능에 미달한 경우

성능미달책임 = 계약금액 * (1 - AcceptanceTest성능 ÷ 설계제안성능)

다) 손해배상: 실손해액

라)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손해배상 및 특별조건 제2조 성능미달 책임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제안서 1부.
3. 공사일정표 1부.
4. 도면 1부.
5. 견적서 1부.
6. 설비성능검증기준(승인테스트) 1부.
7. Spare Part 공급 확약서 1부.
8. 안전관리 서약서 1부.



2023. 11. 01.

도 급 인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10

대표이사 이 창 엽



수 급 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9길 25

대표이사 김 영 민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총칙)

- ①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 ② 본 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은 이 조건(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말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면 합의한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도급인"이라 함은 롯데웰푸드 김천공장 자동화설비 제작설치공사(이하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도급인을 대신하여 공사와 현장관리를 대리하는 대리인(롯데건설주) CM사업본부, 이후부터는 CM)을 포함한다.
- ②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는 설비업자를 말한다.
- ④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⑥ "제안서"라 함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조견표, 제안서, 공사도면, 공사일정표, 견적서(내역서)를 말한다.
- ⑦ "견적서"라 함은 공종 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단, "수급인"이 "도급인"에 제출한 내역서는 "CM"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천재지변"이라 함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진, 화산활동 등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자연재해를 의미한다.
- ⑨ "불가항력"이라 함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고,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사건으로, 사태 발생 후 당사자가 최선의 예방수단을 다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전염병 등을 의미하며, 수급인"의 공사시공으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
- ⑩ 준공기한은 "수급인"이 공사 도급 업무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기한으로 준공승인일 이후에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등 제25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단, 준공기한은 상세설계 및 사업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 ⑪ 준공일은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등 제25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한 날을 의미한다.

제3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별조건,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공사일정표, 도면, 견적서, 설비성능검증기준, Spare Part 공급 확약서, 안전관리 서약서로 구성(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된다.
-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1항에 기재된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 있으며 하위에 있는 문서의 내용이 우선적 효력이 있는 문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하위의 문서는 상위 문서의 그 상충 내용 범위 내에서 수정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별도의 변경 계약서에 의하여만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중요사항의 통지)

양 당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이 본 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서면 통지가 송달 불능된 때에는, 그 상대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환부수취 거절의 표시를 한 등기우편의 발송으로써 갈음할 수 있고, 당해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그 우편을 발송한 때에 위반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반 방침의 준수)

- ① “수급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도급인”的 윤리경영, 환경보전, 개인정보보호 의지와 방침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② “도급인”은 전항의 방침에 대한 강령과 지침 등을 제정하여 “수급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수급인”的 임직원, 이행보조자 등이 전항의 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에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환경관리)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환경오염 억제 및 방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2.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
 3.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 대책
 4. 기타 “도급인”이 요구하는 오염방지 대책
- ② 본 계약의 이행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는 “수급인”的 공급범위 내에서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처리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환경관리 실태를 수시로 실사할 수 있고,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환경오염에 관한 일체의 민원을 그 책임과 부담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되도록 방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당사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제1, 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되지 아니한다.

제8조 (수급인의 의무)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도급업무를 성실, 정확,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급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수행하기에 적절치 아니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도급인"이 인정한 경우, "도급인"은 대체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도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이행 보증보험 또는 각서)

- ① "수급인"은 피보험자를 "도급인"으로 하고 보험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각 가입한 다음 그 증권 원본을 제25조에서 정하는 날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계약)보증보험 :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행(선급금)보증보험 :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행(하자)보증보험 :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년)
- ② 제1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항 각 호의 보험가액에 부합하도록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액을 증액하고 그 증권 원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면 합의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준공기한이 연장된 경우 "수급인"은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조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을 갱신하고 그 증권 원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이 본 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보험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자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2장 업무의 수행 및 인력 관리

제10조 (공사재료)

- ① "수급인"은 주요 국제공업규격의 신품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재료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 외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도급인"의 검사 없이 "수급인"이 실제로 사용한 재료는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자체 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다른 재료를 수배하여 "도급인"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본 항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반출하거나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 일정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착공 및 공정보고)

-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2. 공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호 협의한 사항
-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2조 (시정 요구)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제 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 ①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이 변경·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은 적어도 공사 착수 14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의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가설구조물을 포함)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양사는 협의를 통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의 견적이나 신규비목의 물가정보단가에 유사비목(또는 평균)의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도급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제13조의1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 1. 계약내용의 변경
 -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 ② "수급인"은 제13조의1 및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공사기간의 연장)

-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 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 3. 원자재 수급불균형
 -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3조의1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검사 및 인도)

-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2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의 검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도급인"은 전항의 준공검사 결과 공사 목적물이 계약 조건대로 시공되고, 보전 및 운영교육의 실시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준공일로 본다.
- ③ 제1항의 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정함을 준용한다.

- ⑤ "수급인"이 전항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급인"이 재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날까지 "수급인"은 제3항의 보수 또는 개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도급인"이 제2항의 인수를 마친 경우 "수급인"은 모든 공사시설 및 잉여 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그 책임과 부담으로 본 조의 검사와 재검사, 이의 제기, 보수 및 개조, 철거와 반출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본 조에 따른 "도급인"의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보수 또는 개조를 하더라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이 계약 조건에서 정한 성능에 미달함을 인정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의 목적물 인수 전까지 보전 및 운영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성능 미달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분사용)

- ① "도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자보수)

- ① "수급인"은 제15조 제2항의 준공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제16조에서 정한 부분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1. 품질 및 상태의 결함 또는 규격 불일치
 - 2. 최종인수 및 모든 작업의 인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 3. 설치 또는 보수 작업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결함
 - 4. 무시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결함
 - 5. 저급 재질 선정에 따른 결함
 - 6. 재질 형상의 변질에 의한 결함
 - 7. 제작 잘못으로 기인한 결함
- ②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전항의 무상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진행한 이후 3개월 이내 동일한 문제 발생시 무상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③ 무상하자보증 기간 중 "수급인"이 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를 미이행 또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또는 불완전한 조치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장비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3호의 증권 원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관리)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① "수급인"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투입인력("수급인"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며, 투입인력의 작업상 또는 보건상 위해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는 상기 안전관리비 및 법정경비의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투입인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에 대해 즉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수급인" 및 그 투입인력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다.

제18조의1 (건설근로자의 보호)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긴급조치)

-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8조의3 (안전조치의무)

- ①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수급인"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제,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수급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⑤ "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⑥ 본 조의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제18조의 2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 ① "수급인"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이행보조자를 선임하는 경우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이들의 행위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수급인"은 그 소속 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위탁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그들을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투입인력이 "도급인"의 직원으로 오인되거나 간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투입인력이 위탁업무를 안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서 안전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그 임원, 직원 및 제3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및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수급인"이 "도급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하고, 계약서 등에 위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이 전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급인"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하며(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포함하며, "도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투입인력의 휴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야간, 휴일 용역제공에 따른 사고의 예방, 과로방지를 위하여 대체(예비)인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원 및 현장대리인)

- ① "도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감독원(CM) 또는 감리자를 선정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CM) 등의 요청 및 감독, 감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지휘자 또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자체 없이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1.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지휘명령
 -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도급인"과의 연락 및 업무조정
 - 3. 투입인력에 대한 규율질서의 유지
 - 4. 기타 본 계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④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수급인"은 "도급인"이 따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주임기술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사수행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이 경우 주임기술자의 선임 사실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현장대리인과 주임기술자는 "도급인"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⑦ 현장대리인과 주임기술자는 겹할 수 있다.
- ⑧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주임기술자가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⑨ 전항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종업원 또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대금의 지급과 조정

제21조 (공사대금)

- ①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선금(계약금액의 20%)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2. 중도금 1차 (계약금액의 15%) : "수급인"은 Sub-Order(주요기자재: 모터, 철자재 등 장납기품) 완료 시 "도급인"에게 중도금 1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3. 중도금 2차 (계약금액의 25%) : "수급인"은 설비 납품 현장 도착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2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중도금 3차 (계약금액의 20%):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설비 설치 완료 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3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준공금(계약금액의 20%) : "수급인"은 성능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 서류 및 일반조건 제25조 서류 제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최종 인수조건 충족에 대한 "도급인"의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최종 인수인계서 서명 시점에 "도급인"에게 준공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도급인"은 적정성 검토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선금)

-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선금 청구와 동시에 선급금이행보증증권 및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해야한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수급인"이 선급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준공일과의 관계)

"수급인"은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수급인"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준공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 (양도 등의 금지)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제출 서류)

- ① "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 선금 지급 신청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 업무 수행 계획서,
 2. 중도금: 중도금 지급 신청서, 도면, 내역서(계약내역서 물량 대비), 설계변경 자료, 현장

사진

3. 준공금: 준공금 지급 신청서, 최종 내역서(계약내역서 물량 대비), 설계변경 최종 자료, 최종 사진첩(제본 3부, PPT파일 및 PDF 파일로 보관된 USB 3개), 검수 완료 확인서(장비 성능 테스트), 최종 도면(제본 5부, CAD 파일 및 PDF 파일로 보관된 USB 3개), 교육 실시 확인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제본 5부, PDF 파일로 보관된 USB 3개),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4. "도급인"이 계약서에 명기된 서류 외 산출물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급인"은 제출해야 한다.
- ② "수급인"이 전항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전항 제 1호의 서류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 제 2호의 서류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전항 제 3조 서류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직접 공사 목적물의 인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③ 전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수급인"이 제출한 일체의 담보에 관한 "도급인"담보권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④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또는 위약벌 채권을 가지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손해액에 가산하여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 (대금 조정)

당사자는 본 계약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에 허위 또는 착오가 있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제27조 (손해배상)

"발주사" 또는 "공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서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 본 계약에 따른 공사용역 기타 의무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 사유가 종료하는 즉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29조 (지체상금)

-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근무일)마다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의 한도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한다."도급인"과 "수급인" 양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위약벌임을 확인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실행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0조 (계약 해제 등)

-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을리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사전 서면 시정최고를 받고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상대방이 파산, 회생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때
 3.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 강제집행(공매를 포함한다) 절차가 개시된 때
 4. 상대방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때
 5.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6.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때
-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 합의한 착공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에 도급 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3. "수급인"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특허, 면허, 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러한 등록이 말소된 때
 4. 본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때

5. 본 계약의 일부로 보는 문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6. 본 계약에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받은 때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21조의 공사대금을 60일 이상 미지급한 경우
 2.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한 때
- ⑥ 본조의 해지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계약해지의 효과 및 후속조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확인 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하도급)

- ① "수급인"이 본 계약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2조의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기타

제33조 (계약의 해석)

당사자간 본 계약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의하고, 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며, 상관습도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34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35조 (합의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심판할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6조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양 당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

제1조 (총칙)

본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성능미달 책임)

- ①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르는 공사목적물의 검사 시 공사 목적물의 성능이 본 계약서 별첨서류 '7. 설비성능검증기준(승인테스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15조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개조를 통해 미달하는 성능을 보완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이 계약조건에서 정한 성능에 미달함을 인정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는 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성능미달로 인한 금전적 가치의 감소분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손해배상, 본조의 성능미달 책임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및 위약벌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항의 성능 충족 및 미달 여부는 본 계약서 별첨서류 '7. 설비성능검증기준(승인테스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 ③ 본 물류자동화시스템에 투입된 화물이 낙하/파손 등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정산)

- ①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설계요소 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미투입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에서 차감 정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설비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본 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외에 계약체결 후 미숙지 등 수급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유지보수 동선)

기본 설계 과정 중 미 반영된 유지보수 동선(계단 등)은 준공 전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공사장소에서 "도급인"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하고 낙하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수급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공사시간 중 또는 공사시간 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의한"도급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안전인증 획득 및 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사수행을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안전조회, 안전보건교육, 안전회의, 건강진단, 사전위험성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은 공사수행 중 안전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 및 "도급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급인에 대한 통지를 해태(懈怠)한 경우, 그로 인하여 "도급인"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수급인"은 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는 규정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급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공구 및 장비도 관련규정에 합격된 것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규정에 위반된 복장, 공구, 장비 등의 경우 "도급인"의 권한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하도급 내역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수급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기성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제6조 (품질관리)

- ① 현장의 품질관리 지침은 현설조건 및 계약에 포함 조건임.
- ② "수급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는 공사용 시방서 및 도급인의 현장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의 제반 요건에 따라 수행하고 공사 수행 시 제공되는 도면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각종 시공계획서 및 도면 등을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주요 구조부 및 기타 구조부에 대해 시공 전에 반드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도급인"의 검토, 승인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고, 시공상세도면은 목록을 작성하여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⑤ 계약요건에 "수급인"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입자재 구매 시 품질관리계획서 내용에 첨부하고 지입자재 및 지급자재관리 기준을 제출하여 관리한다.
- ⑥ "수급인"은 시공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급인"에게 시공검사를 의뢰하고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의 합격 확인이 있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 ⑦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시험 및 검사요청이 있을 시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 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 ⑧ "수급인"은 공사 수행 중 품질검사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기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교정 후 관련 사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등록하고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장비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⑨ "수급인"이 설비제작을 수행할 경우 제작 및 조립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 구매 및 제작에 관련되는 모든 근거를 확보하여 품질기록으로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요 검사점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담당자에 의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 ⑩ "수급인"은 자격인정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만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 ⑪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공실태점검 외 어떠한 형태의 대관감사 시에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⑫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재시공비 및 검사의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7조 (현장 및 시공관리)

- ①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장비 및 기공과 조공을 분류한 일일출역집계표(작업내용 상세히 기술)를 매일 오전 정해진 시간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현장 내에서 "수급인"의 직원이나 기타 피용인이 안전사고, 자재/장비/공사목적물 파손, 도난 등의 제반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수급인"의 직원이나 기타 피용인이 도급인이 규정한 현장 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작업투입 전 현장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고, 선후행 공종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전에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없이 작업을 개시할 경우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수급인"은 공사수행 중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협의를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면상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
 2. 도면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공사수행 도중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 ⑤ "수급인"의 시공부주의 및 시공 잘못으로 인한, "수급인"의 시공 분에 대한 재시공과 타공종분에 대한 파손 및 재시공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기한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도급인"이 승인한 일자까지 시정하도록 한다.
- ⑥ "수급인"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작업수행을 "수급인"이 이행치 않아 "도급인"이 서면(작업지시서 등)으로 이행수급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이 약속한 공정을 명백히 지연하고 있다고 "도급인"이 판단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 후속공정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⑧ "수급인"은 공사범위에 속하는 작업수행을 위한 치수, 형태, 공법 등이 명기된 시공도면(Shop

Drawing)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착수한다. "도급인"의 요청에 불구하고 시공도면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작성된 시공도면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⑨ 상기 ⑤, ⑥, ⑦, ⑧과 관련,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조치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 통보 후, 선조치하고 그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하여 "수급인"에게 청구 혹은 지급예정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이의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⑩ "도급인"은 시공상 필요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요구하여 공법설명서 및 샘플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⑪ 현장 내에서의 취사 및 숙박은 불허하며, 인가되지 않은 무단 숙박 및 취사행위로 인한 여하 사고 발생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⑫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할 시에는, 서면으로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위치에 "수급인"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 및 가설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상의 이유로 가설사무실 등의 이전을 "도급인"이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시운전 시 실화물 사용)

- ① "도급인"은 시운전 기간 동안 실화물을 사용하여 시운전할 수 있다.
- ② 실화물을 사용하여 시운전할 시, 실화물과 센터 운영인력은 "도급인"이 제공하며 자동화설비 운용인력은 "수급인"이 제공한다.
- ③ 제1항의 시운전 기간 동안 실화물을 사용하여 시운전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손해의 부담을 결정한다.
단, 해당 손해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 (제출서류 및 시공보고회)

-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 후 계약목적물 시공 전 하기에 명기된 서류 중 "도급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도급인"이 지정하는 시기까지(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공사 착수 전 까지)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보고회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전체예정공정표
 3. Project조직도
 4.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5. 인원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6. 자재투입계획(자재승인 관련서류 포함)
 7. 시공계획(물량소화계획, 양중계획)

8.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9. 품질관리계획(시공실명제 관리, 검사 및 시험 계획)
 10. 시공도면(SHOP) : 시공도면은 시공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계 및 관련자격증, 근재보험사본, 기타
- ② 시공보고회는 "도급인"의 승인 시 시공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은 "수급인"의 1개월 이상의 체불금(노무비, 장비비, 식대,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대금지급 현황(증빙사본 첨부) 및 체불금 해소계획(제출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해소방안 포함)을 "수급인"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그 즉시(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체불금 해소계획에 따라 (1)개월 이내 체불금을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불금 해소기간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 (민원에 대한 책임)

"수급인"은 공사 수행상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매연, 비산먼지, 폐기물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상의 제한이나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반 민원(민·형사 및 행정상의 청구나 제재 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수급인"의 사전동의)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본 계약에 의한 미지급 기성금 및 앞으로 지급할 대금 중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보하고, 본 공사관련 "수급인"의 임금채권자, 납품업자, 장비업자, 식당업자 등(이하 "수급인의 업체"라고 함)에게 기 발생한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수급인의 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의 1회 지급지연으로 "수급인의 업체"로부터 직불을 요청 받은 경우.
단, 대금 지급지연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1호 내지 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사유로 "수급인"이 "수급인의 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인의 업체"가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신청(재산보전 처분신청 포함)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및 임금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 ② "수급인"은 "수급인"의 노임 또는 거래처 대한 변제의무는 물론 "수급인"이 이를 이행치 않아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수급인"이 지며, "도급인"이 전항의 1호 내지 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권리가 발생하거나, 4호에 따라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를 초과한 체불금에 대하여는 도급인에게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저작권)

-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한 일체의 기기(소프트웨어 포함)가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도급인"에 발생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을 통하여 새롭게 산출된 산출물(이하 "신규 산출물"이라 함)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수급인"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이러한 신규 산출물의 이용을 허락한다.
- ③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수급인" 및 제3자가 창작하여 보유하고 있던 솔루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서는 "수급인" 및 원소유자에게 그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며, "도급인"은 본 계약에 따라 산출된 시스템 운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해당 솔루션의 사용권을 갖는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2항의 이용을 허락한 신규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침해 행위에 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한을 수여한다.

제13조 (설계변경)

설계 변경 등은 공사 중 "도급인"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 승인 받지 않은 설계변경은 사후에 진청하더라도 "도급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나,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계약 해지)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인"이 제안서 및 기타 제출자료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② "도급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설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 때
- ③ 계약조건에 따른 보험 발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때

제15조 (정보보안)

"수급인"은 본 계약상 의무 이행과정에서 "도급인"의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 ①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준공일(최종 인수 서명 시점)로부터 2년간 본 계약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서비스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며 하기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준공금 신청 시 "도급인"에게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 실시 확인서
 2.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3.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 ③ "수급인"은 긴급 유지보수 상황(현장에 근무하는 "수급인"의 유지보수 인력이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지체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